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2,432,614	10,872,978
일반회계	338,472,961	10,154,189
특별회계	23,959,653	718,790
기타특별회계	23,959,653	718,7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22,036	186,661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832,104	24,963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408,953	12,269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8,320	2,950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4,382,470	131,47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3,698,800	110,964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10,414	36,312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6,406,556	192,19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44,999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